#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9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이언주·허성무·이개호

황 희·정성호·황명선

소병훈 · 민홍철 · 황정아

김현정 · 안도걸 · 권향엽

김정호 · 강준현 · 이상식

윤준병 · 김동아 · 정진욱

이재관 의원(19인)

# 제안이유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 이하로 감소하였음.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 과 실증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첨단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첨단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 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함(안 제12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 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첨단 선박의 구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 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6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 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첨단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2. "첨단조선업"이란 첨단 선박을 건조·개조 또는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 3. "첨단조선업자"란 첨단조선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4.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등을 통하여 규모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6. "스마트야드"란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 시설을 말한다.
  -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자동 물류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나. 삼차원 스캐너를 활용한 가상 연구시설 조성 관련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다. 그 밖에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의 자동화, 무인화 등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7.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 란 첨단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 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첨단조선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 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첨단조선업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 3. 첨단 선박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 4. 첨단조선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

한 사항

- 5. 첨단 선박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첨단 조선기자재 국산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첨단조선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첨단조선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9.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첨단조선업 생태계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 선박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 6. 첨단 선박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첨단조선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 등

제7조(첨단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 화
- 2.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 3. 첨단 선박 관련 정책 및 기술에 대한 국내외 조사·연구, 실태조 사 및 통계의 작성
- 4.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연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 •관리
- 5. 첨단 선박 및 첨단조선업 시장 상황의 조사 · 분석
- 6. 첨단 선박 실증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연수
- 7. 실증화를 완료한 첨단 선박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 8. 첨단 선박에 대한 이해와 활용·확산을 위한 출판 및 홍보·전시 ·교육
- 9. 그 밖에 실증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실증센터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실증센터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실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실증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실증센터는 법인으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⑦ 실증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실증센터의 장은 첨단조선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 관련 기술 및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에 대한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실증화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 2. 실증화에 필요한 장비·시설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 3. 실증화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 4. 그 밖에 실증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첨단 선박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첨단 선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1. 첨단 선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2. 첨단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2조(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 ①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승인할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 해당 첨단 선박의 혁신성
  -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4. 제4항에 따른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 5. 그 밖에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승인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항해하는 자는 첨단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여

- 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 직원의 직무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승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첨단조선업 지원

- 제13조(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첨단조선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 와 조세상·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첨단조선업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첨단 선박의 개발·건조·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험 설비 등의 구입
  - 2.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 3. 첨단 선박의 해외시장 진출
  - 4. 그 밖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조선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우선구매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건조한 첨단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선박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 선박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선박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첨단 선박을 사용하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첨단 선박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첨단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내국법인인 첨단조선업자가 건조한 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첨단 선박의 구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6조(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 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 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이하"클러스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클러스터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2. 클러스터 내 대학 · 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 3. 첨단조선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 4.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 5.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구축
  - 6.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 7.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 8. 첨단조선업을 위한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 9. 그 밖에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대학 · 연구소 및

- 기업을 위하여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조선업 관련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이하 "스마트야드 구축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 2. 스마트야드 구축등과 관련된 신제품 · 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 3. 그 밖에 스마트야드 구축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촉진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는 첨단조선업 분야 숙련기술을 보유한 내국인 전문인력을 유지·관리하고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공급망 안정화

- 제19조(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첨단 선박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첨단 선박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6. 그 밖에 첨단조선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 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제21조(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ㆍ제공
  -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 인증 실증 지원
  -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부품·장비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지원
  -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

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첨단조선업자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자에게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첨단조선업자가 공급 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첨단조선업자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제6장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제24조(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는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이하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4.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2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 3.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을 생산하거나 해외진출한 첨단조선업자의 애 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 4.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 5.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 6. 그 밖에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 관과 협의하여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전략회의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실증센터의 임직원
  - 3.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30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